「평창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9월 23일, 이창열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6년 10월 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10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창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자긍심을 높이며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지급기준일을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장수노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을 1회 지급하며, 신청 및 지급 절차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망・전출 등 지급 제외 사유와 부정수급 등에 따른 장수축하금 환수 기준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안 제8조)

마. 시행 당시 요건을 충족하는 95세 이상 주민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을 장수축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임.

❍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절차를 정하고 지급 제외·환수 사유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조례 시행 당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9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두어 제도 시행 초기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음.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여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회의록 참조」

5. 토론 요지:「회의록 참조」

6. 심사 결과:「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없음」

8. 기타 사항:「없음」